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'등록기준지'란 '본적'을 말합니다. 등록기준지(본적)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법인이 임원이 경우에는 직무수행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.

임 원 명 부

연번	직위	성 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등록기준지 (법인 주소)	연락처
1	이사장	이유대	123456-1789012	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	02-383-8380
2	이사	서협동	450815-1234567	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	010-1544-5077
3	이사	김필요	500625-2345678	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7	02-1544-5077
4	감사	나정직	480815-2345678	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11	010-383-8388

작성방법

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
SEOUL COOP SUPPORT CENTER